瑞山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査 報 告 書

1. 審 査 經 過

가. 提出日字 : 1998. 2. 14

나. 提 出 者 : 瑞 山 市 長

다. 回附日字 : 1998. 2. 17

라. 上程日字 : 1998. 3. 2

2. 提案說明要指(提案說明: 會計課長 韓基宅)

가. 提案理由

o 국유재산관리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제도와의 불균형한 사항을 보완·개정하고,

o 국가경쟁력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.

나. 主要骨子

o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대상 재산을 아파트형 공장,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,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

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2조).

o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천분의 25로 개정함(안 제23조)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

o 본조례 개정조례안중 제22조의 공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 확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시불로 납부하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, 지역경제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,

o 개정조례안 제23조의 대부료 및 사용요율중에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토지에 건물이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은 25/1000로 규정되어 있으나, 현행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에는 공유재산토지에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요율은 '81.4.30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25/1000, '81.5.1이후 건물이 있는 토지는 50/1000으로 되어 있어서 국유재산법상 사용료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 사용요율이 불균형으로 인한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국유재산법상의 요율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요율이 균형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며,

o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,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

- 없었음

5. 討　　論

- 없었음

6. 少數意見

- 없었음

7. 審査結果

- 원안대로 가결

제안번호	제 178호
의결년월일	1998. . . (제 회)

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8. 2.14

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8

제출일자 : 1998. 2.19
제 출 자 : 서산시장

1. 개 정 이 유

국유재산 관리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제도와의 불균형한 사항을 보완·개정하고, 국가경쟁력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 요 골 자

가.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대상 재산을 아파트형공장,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,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2조).

나.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천분의 25로 개정함 (안 제23조).

3. 참 고 사 항

지방자치법제15조 (조례)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(대금납부와 연납)
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(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), 제23조 (대부료 및 사용요율)

서산시 조례 제 호

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,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,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,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
제23조중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천분의 25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)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등)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매각 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 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6.(생략) (신설)	제22조(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등) --- --- --- ---. 1. ~ 6.(현행과 같음) 7.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,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,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,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제23조(대부료 및 사용요율) ① ~ ⑤(생략) ⑥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천분의 25로 한다. ⑦(생략)	제23조(대부료 및 사용요율) ① ~ ⑤(현행과 같음)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천분의 25로 한다. ⑦(현행과 같음)